(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건강등급 적용 표준체 계약전환 특약

2. 건강등급에 관한 사항

가. “건강등급”은 피보험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의료이용정보 등을 기준으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산정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하 “건강등급”이라 한다)

나. 건강등급은 건강등급 산출 시스템을 운영하고 건강등급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이하 “건강등급 산출 및 정보 제공회사”라 한다)의 건강등급 산출시스템을 통해 산출된다.

다. ‘나’에 따라 건강등급 산출 시 최근 1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 중 가장 최신 결과(다만, 1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가 없거나 건강등급 산출에 필요한 지표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 및 직전 2개월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동안의 의료이용기록 등이 사용되며, 건강등급 산출에 필요한 지표는 다음과 같다.

※ 건강등급 산출에 필요한 지표: BMI, 혈압(수축기/이완기), 요단백, 혈색소, 공복혈당,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청크레아티닌, 간기능 수치(ALT, 감마GTP), 내원일수, 총 급여비용, 흡연여부 등

라. 건강등급은 ‘4. 청약 시 건강등급 산정에 관한 사항’에 따라 청약 시 산정된 건강등급을 최초로 적용하며,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1년 주기로 ‘5. 건강등급 재산정에 관한 사항’에 따라 건강등급을 재산정하여 적용한다.

마. ‘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4. 청약 시 건강등급 산정에 관한 사항’ 및 ‘5. 건강등급 재산정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건강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경우, ‘5. 건강등급 재산정에 관한 사항’에 따른 다음연도 “건강등급 재산정일” 전일까지 건강등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건강등급 재산정일” 이전에 건강등급 산출 후 회사에 통보한 경우에 한하여 차회 이후의 납입 보험료부터 “건강등급 재산정일” 전일까지 건강등급이 적용된다.

3. 건강등급 적용 표준체 계약전환에 관한 사항

가. 적용대상 및 방법

"전환 전 계약"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계약자가 계약전환을 신청하고 회사가 계약전환을 승낙한 경우 일반심사형 계약으로 계약을 전환한다.

1) 최초 청약 시 건강등급의 적용을 선택한 계약
2) 전환 신청 시 연체된 보험료가 없는 유효한 계약
3) 전환 신청 시 피보험자가 회사가 정한 "계약전환 시 확인사항"을 모두 충족한 계약
4) "전환 전 계약"이 간편심사형인 계약
5) 전환 신청 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65세 이하인 계약
6) "전환 전 계약"의 주계약 납입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

나. 계약전환 시 확인사항

1) 최초 도래하는 "건강등급 재산정일"부터 전환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유효한 건강등급"을 보유한 경우
2) 전환신청일 직전 "건강등급 재산정일"에 피보험자의 건강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경우
3) 피보험자가 전환신청일로부터 직전 5년동안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지 않은 경우
4) 피보험자가 전환신청일로부터 직전 5년동안 "특정질병"으로 진단받지 않은 경우

다. '나'의 전환신청일로부터 직전 5년동안이라 함은 5년 전 전환신청 해당일로부터 전환신청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월에 전환신청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전환신청 해당일로 한다.

라. '나'의 '1)' "유효한 건강등급"이란 '5. 건강등급의 재산정에 관한 사항'에 따라 적용된 건강등급을 말한다.

마. '나'의 '4)' "특정질병"은 최초 보험계약 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진단, 입원 또는 수술 여부를 질문한 질병을 말한다.

바. "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 합계가 "전환 전 계약"의 보험료 합계보다 큰 경우에는 계약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 "건강등급 할인 대상상품"이 모두 보험료 납입 면제된 경우에는 계약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 계약 전환 신청은 전환 전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최초 계약체결 이후 5년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10년 경과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자. 회사는 '가' 및 '나'의 내용을 확인하여 계약전환을 승낙 또는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전환을 거절한 경우에는 기존계약이 유지된다.

차. **계약전환의 안내**

1) 회사는 계약전환 신청 가능 기간 종료일 전까지 매년 1회 이상 계약자에게 관련 내용(계약전환 요건 및 계약전환 절차 등)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다만, '가'의 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계약에 대하여는 관련 안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계약전환 신청기한 내에 계약자의 계약전환 신청이 없는 경우(계약자와의 연락두절로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전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카. '가'에 따라 계약전환이 되는 경우 "전환 후 계약"은 아래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전환 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환된다.

1) 납입면제사유를 제외한 보장내용

2) 갱신/비갱신 유형

3) 해약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기본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

4) 간편심사 유형 변경을 제외한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타. 계약전환 시 주계약 사업방법서에 따라 이미 선납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 선납보험료 잔액을 반환 후 계약을 전환한다.

파. "전환 후 계약"의 적용일은 회사의 계약전환 신청 승낙 후 최초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일로 한다.

4. 청약 시 건강등급 산정에 관한 사항

가. 주계약 청약 시 이 특약에 따른 건강등급의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청약일까지 건강등급을 산출해야 하며, 청약 시 적용하는 건강등급은 청약일을 기준으로 그 날을 포함하여 직전 60일 이내에 산출한 건강등급 중 가장 최근에 산출한 건강등급으로 적용한다.

나. '가'에 따른 건강등급은 청약일부터 적용하며, '5. 건강등급 재산정에 관한 사항'에 따라 다음 도래하는 "건강등급 재산정일" 전일까지 적용된다.

다. ‘가’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건강등급을 산출하지 않아 ‘가’에 따른 건강등급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청약 완료 이후 피보험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건강등급 산출 방법 및 청약 이후 건강등급을 산출할 수 있는 기한(이후 “산정기한”이라 한다)에 대해 안내한다.

라. ‘다’의 “산정기한”이라 함은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날로부터 15일과 제2회 보험료 납입기일 직전 2영업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

마. ‘다’에 따라 건강등급의 산출이 필요한 피보험자는 “산정기한” 이내에 건강등급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때 회사는 제2회 보험료부터 건강등급을 적용한다.

바. ‘다’ 내지 ‘마’에도 불구하고, “산정기한” 이내에 건강등급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 ‘5. 건강등급 재산정에 관한 사항’에 따른 다음연도 “건강등급 재산정일” 전일까지 건강등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건강등급 재산정일” 이전에 건강등급 산출 후 회사에 통보한 경우에 한하여 차회 이후의 납입 보험료부터 “건강등급 재산정일” 전일까지 건강등급이 적용된다.

아. ‘마’ 및 ‘사’에 따라 건강등급이 적용되어 건강등급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적용된 건강등급 및 변경된 보험료에 대해 안내한다.

5. 건강등급 재산정에 관한 사항

가. 건강등급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1년을 주기로 재산정하여 변경 적용하며, 피보험자는 매년 연계약해당월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하 “재산정 기간”이라 한다) 건강등급을 산출해야 한다.

나. 회사는 매년 “재산정 기간”이 도래하면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건강등급 재산정일” 직전 1개월 이내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최소 2회 이상 안내한다.

1) 건강등급 재산정 기간

2) 건강등급 산출 방법

3) 건강등급 변경 시 적용되는 할인율

4) ‘바’에 따라 건강등급에 대한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항

다. 피보험자가 “재산정 기간” 이내에 건강등급을 산출한 경우, 연계약해당월의 첫 번째 날(1일)(이하 “건강등급 재산정일”이라 한다)에 건강등급을 변경적용하며, 변경된 건강등급은 다음연도 “건강등급 재산정일” 전일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

라. 피보험자가 “재산정 기간” 이내에 건강등급을 산출하지 않았으나 “건강등급 재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그 날을 포함하여 직전 90일 이내에 산출한 건강등급이 있는 경우, 직전 90일 이내에 산출한 건강등급 중 가장 최근에 산출한 건강등급을 “건강등급 재산정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마. 회사는 계약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건강등급 재산정일”부터 적용되는 건강등급 및 변경된 보험료에 대해 “건강등급 재산정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안내한다.

바. ‘가’ 내지 ‘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재산정 기간” 이내에 건강등급을 산출하지 않았으며 “건강등급 재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그 날을 포함하여 직전 90일 이내에 산출한 건강등급이 없는 경우, 건강등급은 다음연도 “건강등급 재산정일” 전일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사. ‘가’ 에도 불구하고 “건강등급 할인 대상상품”이 모두 보험료 납입 면제된 경우, 건강등급 재산정 대상 계약에서 제외된다.

6. 기타 사항

가. 약관 제8조(계약전환의 적용) 제1항에 따라 계약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계약전환 승낙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납입 보험료를 변경하여 적용하며, “전환 전 계약”의 계약자적립액과 “전환 후 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의 차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계약자적립액의 차이로 인하여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납입해야 한다.

나. 약관 제8조(계약전환의 적용) 제1항에 따른 계약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계약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 계약”에서 해당계약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계약은 계약전환이 불가능하며, 세부보장으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소멸사유가 발생한 세부보장은 계약전환이 불가능하다. “전환 전 계약”에서 해당계약이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전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계약에 대한 계약전환을 무효로 하며, 회사는 효력이 없어진 이후 납입한 해당계약의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반환한다.

[별첨]

계약전환 시 확인 사항

※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계약자의 전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가 전환요건을 확인하고 심사하는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계약자가 회사의 전환심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합니다.

건강상태

1. 전환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항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 포함)
2. 전환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특정질병”으로 “진단”받은 사항

※특정질병: 최초 보험계약 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진단, 입원 또는 수술 여부를 질문한 질병을 말합니다.